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207760 저작권등록변경 등 청구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백경태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3가합89062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4.부터 2026. 8.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어문저작물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주소, 거소, 사무소, 영업소에서 보유하거나 보관 중인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어문저작물의 원본, 복사본 파일 및 이를 출력한 문서를 모두 폐기하고,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어문저작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따른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1)]

1)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의 시나리오가 원고의 시나리오에 대한 복제물임을 전제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만을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B의 시나리오가 복제물이 아니라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원고의 2026. 1. 19. 자 준비서면 및 2026. 1. 26. 자 참고서면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주소, 거소, 사무소, 영업소에서 보유하거나 보관 중인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어문저작물의 원본, 복사본 파일 및 이를 출력한 문서를 모두 폐기하고,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어문저작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3면 1행부터 15면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9행의 "별지 1 목록"부터 같은 면 10행까지를 "2018. 12. 28. 별지 1 목록 기재 어문저작물(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저작권자로 등록하였다가, 2026. 3.경 위 등록을 말소하였다."로 고쳐 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안의 아래에서 4행의 "완성 수"를 "완성 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8행의 "전달하였다" 다음에 "(이하 2018. 11. 19. 자 시나리오를 '원고의 1차 시나리오', 2018. 11. 23. 자 시나리오를 '원고의 2차 시나리오'라 하고, 이를 '원고의 각 시나리오'로 통칭한다)"를 추가하고, 표 내부의 각주 2)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8면 8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피고 회사는 2018. 8. 21.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한 'Z'에 지원하면서 피고 B을 PD로, 원고를 작가로 기재한 신청서와 이 사건 트리트먼트를 제출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9. 4. 8. 영화진흥위원회의 'J'에 지원하면서 제목을 'K'으로 수정한 시나리오를 제출하였고, 신청서에는 피고 B을 "제작/작가"로, AA을 "작가"로 기재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PD와 작가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 시나리오 3고를 영화진흥위원회에 결과물로 제출하였다.』

◍ 제1심판결 8면 13행의 "갑 제1 내지 3, 7, 12, 13"을 "갑 제1 내지 3, 7, 12 내지 14"로, 같은 면 14행의 "67호증"을 "67, 86, 87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면 밑에서 4행의 "상당한 업계 경력 등"을 "상당한 업계 경력을 보유하는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6행부터 12면 밑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주장**

가) 저작재산권의 귀속

(1) 앞서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트리트먼트 및 원고의 각 시나리오의 저작권자이다. 설령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위 각 계약의 양도 대상은 '영화(영상)의 저작권 및 용역결과물의 소유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트리트먼트 및 원고의 각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트리트먼트 및 원고의 각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이 피고 회사에게 양도되었고 피고 시나리오 초고 및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의해 원고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유보되므로, 원고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나) 저작권 침해행위

피고 시나리오 초고와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각각 원고의 각 시나리오에 대한 복제물이거나(주위적 주장) 적어도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예비적 주장). 그런데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각 시나리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3)]

피침해저작물	침해저작물	침해행위	침해되는 원고의 권리	이 법원의 판단
원고의 1차 시나리오	피고 시나리오 초고	[주위적: 복제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원고가 작성한 원고의 1차 시나리오를 모방하여 피고 시나리오 초고를 작성함.	복제권	비침해
		② 이를 작성하면서 원저작물의 내용을 수정, 변경함.	동일성유지권	비침해
		[예비적: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원고가 작성한 원고의 1차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피고 시나리오 초고를 작성함.	2차적저작물 작성권	비침해
		② 이를 작성하면서 원저작물의 내용을 수정, 변경함.	동일성유지권	비침해
원고의 2차	이 사건	[주위적: 복제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원고가 작성한 원고의 2차 시나리	복제권	비침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시나리오	등록저작물	오를 모방하여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작성함.		
		② 복제물인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2018. 12.경 H에, 2019. 4.경 영화진흥위원회에 배포함.[2]	배포권	비침해
		③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원저작물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2019. 3. 이를 배포할 당시 제호를 <K>으로 변경함.	동일성유지권	비침해
		④ 복제물인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피고 B을 단독 저작자로 하여 등록하고, 위 ③과 같이 배포 시에도 작가 이름을 피고 B으로 기재하여 배포함.	성명표시권	비침해
		[예비적: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원고가 작성한 원고의 2차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작성함.	2차적저작물 작성권	비침해
		②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원저작물의 내용을 수정, 변경함.	동일성유지권	비침해
		③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등록할 당시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음.	성명표시권	침해

3) 이 사건 저작권등록에 관한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가)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최초 트리트먼트와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의 중간 결과물들을 참고하여 약간의 윤색만 가하는 수준으로 수정한 것으로서 원고

2) 원고는 2019. 3.경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이 2019. 4.경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된 시나리오는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아니나, 편의상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다.

3)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 및 2026. 1. 15. 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의 2차 시나리오의 복제물에 불과한데, 앞서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등록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 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피고 B은 자신을 저작자로 하여 이 사건 저작권등록을 함으로써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제127조에 따라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 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 B을 저작자로 한 이 사건 저작권등록은 저작자가 아닌 자에 의한 것으로서 모인등록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 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는 무효이거나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원고의 각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있고, 피고들은 앞서 2)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내지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13면 1행의 "2) 가)항"을 "2) 나)항"으로, 같은 면 13행의 "2) 가)항 또는 나)항"을 "2) 나)항"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4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위 각 계약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트리트먼트 및 원고의 각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은 피고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4면 15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트리트먼트를 공동창작한 것이다. 피고 시나리오 초고,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피고 B이 원고의 각 시나리오를 모방하여 집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공동창작한 이 사건 트리트먼트를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 B의 시나리오와 원고의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더라도 주제의식, 표현형식, 비문언적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복제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시나리오 초고 및 이 사건 등록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피고 B이고, 원고가 위 각 시나리오의 저작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저작권등록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 B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등록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4]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6. 3. 23. 위 신청을 수리하여 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5면 6행부터 22

4) 2026. 4. 14. 자 참고자료 6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면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각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의 귀속

1) 앞서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작가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가 이 사건 해지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작가계약 제9조 제4항은 "이 사건 작가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제공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등)의 결과물은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해제 또는 해지 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해지합의 제3조도 "본 영화의 일체의 모든 저작권은 피고 회사에게 영구 귀속된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트리트먼트 및 원고의 각 시나리오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피고 회사에 귀속된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위 각 조항은 양도 대상을 "영화" 또는 "용역의 결과물"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트리트먼트 및 시나리오 저작권'이라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이 피고 회사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작가계약의 목적이 원고가 트리트먼트를 수정하고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위 제9조 제4항의 "모든 용역의 결과물"에는 원고가 작성한 트리트먼트 및 시나리오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결과물이 피고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결과물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피고 회사에게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전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③ 이 사건 해지합의 제3조가 "본 영화의 일체의 모든 저작권"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나, 위 해지합의는 이 사건 작가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와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체결된 것인데, 제작사인 피고 회사가 영화 자체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므로 위 조항이 말하는 "일체의 모든 저작권"은 원고가 작성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④ 피고 회사가 영화 제작이 확실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원고로부터 단순히 저작권을 이용하는 대가로 1.500만원(계약금 500만 원 + 1차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도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가 저작권 일체의 양도를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민법 제104조 위반을 주장하여 온 점[5]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에 따라 이 사건 트리트먼트 및 원고의 각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은 피고 회사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에 이 사건 트리트먼트 및 원고의 각 시나리오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에 2차적저작물의 양도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특약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

5) 원고의 2024. 8. 9. 자 준비서면(1) 16면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시나리오 초고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지합의를 통해 원고의 시나리오 초고를 양도받은 것인 점, ② 이 사건 해지합의 제4조는 영화의 크레딧에 원고를 작가로 명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영화 개봉 후 정산수익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시나리오 초고가 영화 제작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통상적으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시나리오 초고에 대한 각색과 수정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④ 더구나 원고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못한 채 피고 회사에 양도된 것이므로 원고의 시나리오가 피고들에 의해 수정 및 개작될 것임을 예정하고 이 사건 해지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트리트먼트 및 원고의 각 시나리오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특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가 무효이거나 원고의 각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①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내지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청구취지와 같은 금지 및 폐기 청구, ②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6.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법 제13조 제1항). 다만, 저작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한편,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각 시나리오에 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이 원고의 각 시나리오를 일부 수정·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각 시나리오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이 피고 회사에 양도된 점, ②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에는 어느 정도 원저작물의 내용변경은 당연히 수반되는 점, ③ 원고가 피고 회사에 원고의 시나리오 초고를 영화제작에 활용하게 할 의사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시나리오 초고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변경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해지합의서는 'T(가제)'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시나리오의 제호가 미정 상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⑤ 아래 7.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변경이 원저작자인 원고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거나 창작의도를 중대하게 왜곡·훼손하는 등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변경행위는 원고가 이를 동의하였거나 이 사건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의 경위,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청구는 이유 없다.

7. 성명표시권 침해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청구와 동일성유지권 침해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 중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 관한 성명표시권 침해 청구만이 남는다. 이때 성명표시권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는 ①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 관하여 피고 B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친 행위, ②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H, 영화진흥위원회에 피고 B 이름으로 배포한 행위이다.[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대한 복제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트리트먼트를 기초로 피고 B이 별도로 창작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①, ② 행위가 각 성명표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ⅰ) 이 사건 트리트먼트가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대한 복제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7]

나. 이 사건 트리트먼트가 공동저작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6)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당시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한 시나리오는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아니나, 편의상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7) 원고는 피고 시나리오 초고가 원고의 1차 시나리오에 대한 복제물이라고도 주장하나, 해당 저작물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복제권 침해(예비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피고 시나리오 초고가 원고의 1차 시나리오에 대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도5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2, 제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트리트먼트에 대하여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위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트리트먼트는 원고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트리트먼트는 원고가 2018. 3. 29. 공모전에 응모한 최초 트리트먼트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최초 트리트먼트에는 이 사건 트리트먼트의 기초가 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시놉시스가 약 30페이지 분량으로 담겨있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최초 트리트먼트를 시나리오로 개발하기 위해 이 사건 작가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는 제작사인 피고 회사와 상호 협의에 따라 수정 집필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작가계약 제4조 제2항), 기본적으로 트리트먼트 수정과 시나리오 작업은 원고의 의무이므로(제4조 제1항), 트리트먼트와 시나리오의 창작적 표현형식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B이 2018. 7. 26. "트리트먼트 수정 방향"이라는 파일명으로 트리트먼트의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파일을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5호증의2), 위 이메일에는 "첨부파일을 기본으로 씬별 트리트먼트 작업해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기존 트리트먼트를 장소에 따라 나누어 일부 대사 및 표현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분량도 2페이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본격적인 트리트먼트 수정 작업을 위해 작성 틀을 제시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 자체로 창작적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B이 2018. 8. 8., 2018. 8. 20., 2018. 8. 21. 트리트먼트를 수정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각 수정본에는 피고 B이 원고가 작성한 트리트먼트의 대사나 문장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작성한 트리트먼트의 서사구조, 캐릭터 구성, 갈등관계, 구체적 사건의 전개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세부적인 대사나 표현을 가감하거나 문장을 윤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창작적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무엇보다 피고 B은 제작사로서 원고에게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원고의 트리트먼트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단일한 저작물을 공동창작할 의사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도 피고 B의 수정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작가계약에 따라 제작사와 상호협의하여 트리트먼트를 수정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지 피고 B과 트리트먼트를 공동으로 창작할 의사였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인다.

마) 원고가 피고 B이 2018. 8. 20.경 보낸 트리트먼트 수정본의 오타를 수정하여 이를 송부하면서 '수정하느라 많이 고생하셨겠다.'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46호증).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과의 공동 창작의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 B이 보낸 수정본을 검수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피고 B과 함께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사업 신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피고 B의 수정본을 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에 위와 같은 수정본을 전달받은 점, ③ 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것은 이 사건 작가계약 내지 시나리오 작업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 점, ④ 원고가 피고 B에게 "수정하느라 많이 고생했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공동창작자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B과 트리트먼트를 공동으로 창작할 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더욱이 피고 B도 위 지원사업 신청 시 작가에 원고의 이름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대한 복제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인바, 전자는 저작물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된 경우를 말함에 비해, 후자는 저작물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극적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의 결합에 의하여 등장인물이 일정한 배경 하에서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건들이 유사하더라도 아이디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 배경, 필수 장면이라면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 유사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경우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2차적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트리트먼트에 기초하여 별개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음이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저작물 창작일(2018. 12. 12.) 이전인 2018. 8. 20.부터 2018. 11. 23.까지 원고가 그때까지 작성한 시나리오를 피고 B에게 송부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저작물과 원고의 2차 시나리오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는 이 사건 트리트먼트에는 언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는 등장하는 여러 장면들, 즉 ① R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가 S에게 '사망 미신고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전달하는 장면, ② 인력사무소 소장이 S에게 굿을 제안하고, S이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사이에 기타를 든 채 있는 T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 ③ T이 U의 'V'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 ④ S이 T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한 봉지를 건네주는 장면 등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⑶ 더욱이 이 사건 등록저작물과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트리트먼트에는 표현되지 아니한 여러 지문과 대사들이 동일·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

원고의 2차 시나리오(갑 제4호증의1)		이 사건 등록저작물(갑 제12호증)	
	"치이이익-" 귀가 먹먹한 적막 속에 들리는 감압 소리. 온통 하얀 철제 벽면이 보인다. 작은 잠수함 형태의 철제 탱크, 챔버 안. 챔버 한 쪽에 기대 잠이 든 S, 깊은 꿈에서 헤어 나오는 중이다.		하얀 철제 벽면, 잠수함 형태의 탱크 감압실 내부다. "치이이익-" 귀가 먹먹한 적막 속에 들리는 감압 소리.
S#2.	**치료사(V.O)** 자 60피트까지 내려갑니다.	S#2.	**(오퍼레이터 의사)** 자 60피트까지 내려갑니다.
	S (비몽사몽, 잠에 들지 않으려는 듯) 이일은 이. 이이는 사. 이삼은 육.		**S** (비몽사몽, 잠들지 않으려는 듯) 이일은 이. 이이는 사. 이삼은 육....
S#7.	**AB** (S의 빈 잔에 소주를 따르며) 나한테 화풀이요. 것보다.. 어디 돈 융통할 곳 좀 없어요?	S#7.	**S** 아버지 많이 안 좋으시냐?
	S 아버지 많이 안 좋으시냐?		**AB** (S의 잔에 소주를 따르며) 어디 돈 융통할 곳 좀 없어요?
	S 많이 밀렸어? 내가 좀.		**S** 많이 밀렸어? 내가 좀.
S#7.	**AB** 됐어요. 염치가 있지.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빨리 바다에라도 나가야 뭘좀 기	S#7.	**AB** 됐다, 형님. 염치가 있지. 개장하고 3일 내리 쉬었는데 형님 사정이 나랑 뭐 다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대해 볼 텐데요. **S** 바다가 어디 사정 봐가며 사고나? 이렇게 맘대로 할 거면 형이 배사서 선주 하던가! **W** S아... 나 이번 저도 어장만 뛰고 고향		나? **S** 배우긴 니미! 한 십메다 들어가서 물장구나 쳐봤겠지. 이렇게 맘대로 할 거면 형이 배사서 선주 하던가! **W** (한숨) S아... 나 담달에 고향 내려갈라고.
S#8.	내려갈라고. **S** 형까지 왜 그래. **W** 고향에 바지선 경비 자리가 있다네. 이제 이 일도 힘에 부쳐야. 거가면 숙식도 제공되고. **W** 너도 이제 위험한 일 그만하고. 쉬운 일로 알아봐야. (중략)	S#8.	**S** 형님...! **W** 고향에 바지선 경비 자리가 있다네. 이제 이 일도 힘에 부쳐. 물차고 사람도 차거운 이 동네 인제 지긋허다. 한 달 빡시게 돈 벌어갖고 내려갈란다. **W** 너도 그만 허고 딴일 알아봐. (중략)
S#8.	**S** .... 어슴푸레 S의 얼굴에 묻는 식당 불빛. 식당 안, 우걱우걱 밥을 먹는 T의 얼굴이 보인다.	S#8.	**S** .... 식당 안, 우걱우걱 밥을 먹는 T의 파리한 얼굴이 보인다.
S#9.	**S** (눈빛이 매서워지며) 이새끼. 머구리들이 왜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말이 있는 줄 알어. 물질 몇 번해봤다고 건방지게. **T** (다급히) 선생님! 괜찮으세요?	S#9.	**S** (소주를 따르며) 머구리들은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말 아냐? 어린놈이 물질 몇 번 해봤다고 건방지게 돈부터... **T** 선생님! 괜찮습니까?
S#16.	**S** (잠수복 산소를 채워, 서서히 떠오르며) 계속 작업하고 있어. 떠오르는 S 밑으로 머구리들은 여전히 빠르게 작업을 이어간다.	S#16.	**S** (잠수복에 산소를 넣어 부력을 만들며) 넌 계속 작업하고 있어. 높은 밀도로 탁해진 바다 속. 떠오르는 S 시선으로 해녀, 머구리들이 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쟁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S#24.	**T(V.O)** 그러게... 제가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응?'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 **T(V.O)** 제 탓이 아니에요... 다 자초하신 겁니다. 앞서 가는 S, 손목 다이브를 각도를 바꾸자 뒤따라오는 T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인다. S의 투구 안, 눈동자가 옆을 흘기며 온 신경을 T에게 쓰고 있다.	S#21. S#25.	**T** 그러게 제가 빨리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S에게 말하는 걸까. **T** 다 자초하신 거예요. 제 탓이 아니에요. **S** (손목에 찬 심도계 각도를 바꾸자 유리에 뒤따라오는 T이 반사되어 보인다) 잔압 체크해봐.

(4)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와 피고 B의 2018. 9. 21. 시나리오 회의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해준 설정과 대사 예시들에 해당하여 각자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2018. 9. 21. 자 이메일[8]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이 2018. 9. 21.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B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대사 내지 설정을 공유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위 (3)에서 확인되는 공통된 대사 내지 설정은 피고 B이 원고와 구두로 합의한 후 원고의 시나리오를 참고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의 정도가 상당하다.

3)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원고의 2차 시나리오의 복제물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원고의 2차 시나리오와 작품의 줄거리, 주요 사건, 인물 설정, 결말 등이 유사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아래와 같이 피고 B은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을 넘어, 등장인물

8) 피고들의 2026. 1. 29. 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의 성격과 관계, 사건의 전개양상 등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대사와 장면을 추가·변경하였으며, 배경 설정과 등장인물의 행동지문을 구체화하는 등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대한 2차적저작물로서 피고 B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단순히 복제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 별지 3 ⑴의 대비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원고의 2차 시나리오와 등장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다르게 묘사하고,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 내용과 양상을 일부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T이 당차고 적극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원고의 2차 시나리오와 달리(S#5 등)[9],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서는 T이 무덤덤하고 소극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점(S#6 등), ② 만남 초기에 S이 T을 차갑게 대하는 원고의 2차 시나리오와 달리(S#9), T이 AB 등에게 자신의 탈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T이 S의 부탁에 따라 S, AB, W 앞에서 U 노래를 부르는 등 S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점(S#9), ③ S에게 큰 물량을 요구하는 고객 역할과 관련하여,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서는 도매업자가 S을 경계하며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S#13),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서는 일식집 사장으로 설정된 인물이 S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점(S#13), ④ S이 북방한계선을 넘는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2차 시나리오가 해경과 W이 이를 말리거나 경고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반면(S#17),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넘는다는 S을 W이 차마 말리지 못하는 장면으로 변경되어 있는 점(S#17), ⑤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는 S이 T을 걱정하는 말과 행동이 추가되었고, T의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S이 T을 위로하고

9) 별지 3의 각 대비표에 표시된 원고의 2차 시나리오 또는 이 사건 등록저작물의 장면 번호이다. 이하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상호 신뢰관계로 발전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S#18, 27), ⑥ 토탄지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서는 S과 T이 협력을 통해 생존하는 관계가 강조되는 반면(S#37),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는 그 과정에서 S이 T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내용이 보다 강조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S#28).

⑵ 대사, 장면 등의 변경과 추가: 별지 3 ⑵의 대비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는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대사와 장면들, ① S이 R를 발견하고 자신을 숨기기 위해 산부인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S이 병원에서 처제를 만나는 장면(S#3),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하는 장면 및 이에 반응하는 AB의 대사(S#7), S이 T에게 자신의 아들인 X을 투영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W의 대사 등이 추가되고(S#8), ② T과 어머니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T 어머니의 대사가 추가되고 T이 통화하는 시점과 공간도 변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T이 표출하는 감정의 내용도 달라졌다(S#12). ③ 또한,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는 S과 T이 입수를 준비하는 과정이 구체화되고 S과 T이 개조된 투구와 무전 송수신기를 착용하여 향후 상호간 대화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S#15). ④ 한편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있던 일부 대사들은 생략되기도 하였다.

⑶ 사건의 전개양상의 변화: 별지 3 ⑶의 대비표와 같이, 일부 사건의 경우 그 전개양상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① 프롤로그에서 주인공 S의 발을 붙잡는 손이 '의문의 존재'로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S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원고의 2차 시나리오와 달리,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S의 사망한 아들인 X이라고 믿고 기꺼이 심해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② 만선호가 난파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2차 시나리오는 W이 직접 S과 연결된 로프를 끊어버리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로 결심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에 비해(S#18),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서는 W의 개입 없이 문어로 인해 만선호가 불가피하게 난파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S#18). ③ S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의 내용도,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서 S과 아내가 식사를 하면서 마치 X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내가 말하는 장면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S#19),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는 X이 실종될 당시 식사하는 장면을 회상하며 S이 X을 말리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으로 전개되고 있다(S#19). ④ S이 T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나,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서는 T이 S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이에 대해 S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과 달리(S#32),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서는 T이 무서웠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치고 S은 T에게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하는 장면으로 전개되고 있다(S#24). ⑤ S과 T이 대왕문어를 만나 공격을 받는 장면과 관련하여, 원고는 약 13쪽의 분량으로 이를 전개하고 있는 반면(S#38~45)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약 7쪽 분량으로 이를 압축하였다(S#29, 30). ⑥ 갈등의 절정 단계에서 S이 그물에 걸리는 경위와 관련하여도, 원고의 2차 시나리오는 S이 그물을 놓지 못하여 물살에 휩쓸려 그물에 걸리는 것인 반면(S#48),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S이 대왕문어의 움직임으로 발생한 와류로 인해 그물에 걸려 끌려가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S#31). ⑦ T이 S을 구조한 후 함께 수면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 대해 원고의 2차 시나리오는 약 10쪽의 분량으로 이를 상세히 전개한 반면(S#53 이하),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구조 후 곧바로 수면으로 나와 해경선에 의해 발견되는 내용으로 압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S#34, 35). ⑧ 결말의 경우에도 T과 S이 해경선에 의해 구조되는 것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장면으로서는 원고의 2차 시나리오의 경우 T과 S이 감압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장면으로 끝나는 반면(S#56),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등록저작물은 해경선에서 S과 T이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다(S#36).

⑷ 배경 설정, 행동지문 등의 구체화: 별지 3 ⑷의 대비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저작물은 원고의 2차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행동지문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심해라는 배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정보가 부가된 점이 확인된다(을 제88, 8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피고 B은 이를 위해 다이버를 인터뷰하는 등으로 자료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이때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포함되고,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갖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배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9. 4.경 영화진흥위원회에 배포한 시나리오 관련

원고는 피고 B이 2019. 4.경 영화진흥위원회에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배포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배포행위가 원고에 대한 성명표시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문서송부서에 의하면, 피고 B은 2019. 4.경 지원사업에 신청할 당시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이후 지원사업의 결과물로서 시나리오를 제출하여 총 두 차례 시나리오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75장 분량의 시나리오가 피고 B이 2019. 4.경 제출한 시나리오인 것으로 보이고(이하 '2019. 4.경 시나리오'라고 한다), 위 시나리오는 이 사건 등록저작물과 동일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① 2019. 4.경 시나리오의 주인공 이름은 'S', 'T'. 'X'에서 'AC', 'AD', 'AE'로 바뀐 점, ② AD이 부르는 U의 노래도 변경된 점, ③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 AC이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안내교육을 받는 장면, ㉡ R가 AE의 방에서 AE를 그리워하며 오열하는 장면, ㉢ AD의 과거 회상 장면 중 아버지를 잃고 어창에 갇히는 설정, ㉣ R가 해경과장에게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전달하고 이후 춘천지방법원 고성군법원에 이를 제출하는 장면 등이 다수 추가된 점이 확인되어 이 사건 등록저작물과 동일하다거나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배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019. 4.경 시나리오에는 각본가가 표시되어 있지도 않다).

3) 나머지 각 행위

가)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대한 2차적저작물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B이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피고 B만을 각본가로 표시한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2018. 12.경 H에 배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 B의 저작권등록이 사후적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명표시권 침해가 성립한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저작권등록으로 저작물이 대외적으로 공표된다거나 작가가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영화 상영 시에 작가의 성명이 표기됨으로써 성명표시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업계 관행상 시나리오 표지에 시나리오 집필에 참여한 모든 작가의 성명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영화 크레딧에 원고를 각본가로 표시할 예정이었고, 원고가 시나리오 개발에 참여하였던 사실을 숨긴 바 없으므로 성명표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관행이 영화업계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저작자로서 갖는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피고 B이 자신을 단독 각본가로 기재하여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H에 배포한 이상 피고들이 추후 영화에 원고의 이름을 표시할 예정이었다거나 원고가 시나리오 개발에 참여하였던 사실을 숨긴바가 없다는 사정은 원고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저작권법 제127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이 이 사건 저작권등록행위 및 이 사건 등록저작물의 배포행위로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대표자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 피고 B의 위 각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B은 '피고 B이 집필한 버전'이라는 의미에서 H에 배포한 시나리오에 각본가로 피고 B만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강원영상위원회로부터 저작권등록증 제출을 요청받아 급히 이 사건 저작권등록을 마치는 과정에서 피고 B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에게 각 성명표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의 2차 시나리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원작자가 원고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각본가로 자신만을 기재한 시나리오를 H에 각 배포하였는데,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저작권등록 시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임을 쉽게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하여 이 사건 저작권등록을 마친 것인바, 이 사건 저작권등록 경위에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적어도 성명표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인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38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원저작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 B만을 저작자로 한 이 사건 저작권 등록에 나아간 점, ② 각본 작가로서의 경력을 막 시작하는 원고로서는 시나리오에 각본 작가로 표시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는 시나리오 인쇄본이 아니라 실제 영화가 개봉하였을 때 영화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이 각본가로 표시되는 것이었을 텐데, 피고들은 영화가 개봉할 경우 원고의 이름을 각본가로 기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이 사건 해지합의 제4조) 등에 침해행위의 태양 및 경위, 원고의 2차 시나리오에 체화된 인격적 이익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4,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1.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저작권등록 말소등록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송미경

판사 김광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별지 1

어문저작물의 표시

1. 등록번호:
2. 등록일자:
3. 등록부문: 일반저작물 저작권 등록(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4. 제호:
5. 저작자:
6. 등록원인: 저작자 , 창작 2018. 12. 12
7. 등록권리자:
8.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별지 2

어문저작물의 표시

- 원고가 피고 [ ]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아래의 각 문서

순번	날짜	파일명
1	2018. 7. 21.	
2	2018. 7. 26.	
3	2018. 8. 1.	
4	2018. 8. 7.	
5	2018. 8. 15.	
6	2018. 8. 20.	
7	2018. 9. 20	
8	2018. 10. 22.	
9	2018. 11. 1.	
10	2018. 11. 19.	
11	2018. 11. 23.	

- 피고 [ ]이 이 사건 시나리오를 모방하여 작성한 아래의 각 문서

순번	문서의 내용
1	피고 [ ]이 작성한 2018. 11. 22.자 시나리오 <[ ]>
3	영화진흥위원회의 '[ ]'에 제출하였던 시나리오 <[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7

별지 3

(1)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

원고의 2차 시나리오(갑 제4호증의1)		이 사건 등록저작물(갑 제12호증)	
S#5.	<삭제 처리>	S#6.	<삭제 처리>
S#9.		S#9.	
S#12.			
S#13.		S#13.	
S#17.		S#17.	
S#18.		S#18.	
S#35.		S#27.	
S#37.		S#28.	

(2) 대사, 장면 등의 변경과 추가

원고의 2차 시나리오(갑 제4호증의1)		이 사건 등록저작물(갑 제12호증)	
S#3.	<삭제 처리>	S#3.	<삭제 처리>
S#7.		S#7.	
S#8.		S#8.	
S#10.		S#12.	
S#15.		S#15.	

(3) 사건의 전개양상의 변화

원고의 2차 시나리오(갑 제4호증의1)		이 사건 등록저작물(갑 제12호증)	
프롤	<삭제 처리>	프롤	<삭제 처리>
로그		로그	
S#18.		S#18.	
S#19.		S#19.	
S#32.		S#24.	
S#48.		S#31.	

(4) 배경 설정, 행동지문 등의 구체화

원고의 2차 시나리오(갑 제4호증의1)		이 사건 등록저작물(갑 제12호증)	
S#16.	<삭제 처리>	S#16.	<삭제 처리>
S#32.		S#24.	
S#36.		S#28.	

끝.